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검 토 보 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5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의 필요성	4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9
2. 주요 조문별 검토	10
가. 제1장 총칙	10
나. 제2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체계의 구축	16
다. 제3장 학생 사회·정서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	36
라. 제4장 보칙	43
마. 부칙	49
※ 참고자료	
1.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에 따른 마음건강 지원체계	50
2. Wee 프로젝트 관련 통계	5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5.

다.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 등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정하여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서·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 및 지원해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 등은 선정된 지원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최근 수업 중 지속해서 소리를 내거나 물건 던지기, 자리 이탈, 불순응행동, 학습 참여 거부 등 심리·정서 또는 행동의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 관련 평균 상담건수는 ’17~’19 21,411건에서 ’20~’22 24,191건으로 약 13% 증가했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¹⁾ 결과, 16.1%는 정신장애 경험이 있으며,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실정임²⁾.

<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



※ 현재 유병률 : 조사시점(’22.9월~’23.2월)에 정신장애 진단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 평생 유병률 :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자료: 교육부

1)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 대상,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2) 교육부 보도자료, (2024.8).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교육부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Wee 프로젝트를 실시 중임. 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종합 상담·치유 시스템으로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구성됨.

< Wee 프로젝트 구성요소 >

구분	설치 단위	대상	하는 일
Wee 클래스	학교	- 학생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Wee 센터	교육지원청	- 관내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학생 -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상담-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Wee 스쿨	교육청	- 중·장기 위탁 교육 상담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 학생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자료: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www.wee.go.kr)

그러나 기존의 Wee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상담 중심의 Wee 센터 운영으로 교사 연수, 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만 근거를 두고 운영³⁾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조치를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할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제정안은 Wee 센터, Wee 스쿨 등 기존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학생 지원의 절차와 전문적 지원 내용과 함께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간 지원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략)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학생의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도 기대됨.

다만,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5.2.6.)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7,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의 협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및 제16조의 ‘보호자의 책무’와 유사하고,

동 개정안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의에 ‘정서·행동 문제’를 추가하여 Wee 프로젝트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가결된다면 제정안의 일부 입법목적이 선제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5조제7항의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각의 안에 포함되었던 보호자의 동의 없는 긴급지원 조항⁴⁾이 부모의 자녀교육권

4) 의안번호 2202566,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침해 우려로 삭제된 채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긴급지원 관련 조항 또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차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의안번호 (제안일자)	법안명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200110 (2024.6.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Wee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지원여건을 보장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으로 체계적 정책·지원을 추진하며, 학생 지원의 절차와 전문적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학생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현재 많은 지역 보건소가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제정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 체계 활용이 효율적임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으로, 4개의 장, 20개의 본칙,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20개 조문은 총칙규정(4개 조문), 실체규정(12개 조문), 보칙(4개 조문)으로 구분됨.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 본칙(20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1조(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제7조(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12조(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제8조(교육감의 임무 등)	제13조(지정취소 등)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제3장 학생 사회·정서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	
제14조(사회·정서 역량의 함양)	제16조(보호자의 책무)
제15조(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17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비밀유지)	제20조(벌칙)
□ 부칙(1개 조문)	

참고로, 제정안 제8조와 제16조는 각각 교육감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의 책무를 한데 모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문을 제1장으로 이동하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이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학생이 성장기 발달 특성에 맞게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2. “사회·정서 역량”이란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률에서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제정안 제1조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이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과 입법목적의 구분이 더욱 확실하도록 수단에 해당하는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전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정의 규정으로,

“마음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학생이 성장기 발달 특성에 맞게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안 제1호),

“사회·정서 역량”을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으로(안 제2호),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안 제3호),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안 제4호) 각각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3호에서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에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학교에는 대표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3⁵⁾에 의해 설치된 한국과학영재학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가 있음. 이는 영재고 등 타 부처 소관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마음건강 증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지원 범위⁶⁾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교’의 정의에 ‘이에 준하는 학교’가 배제⁷⁾되어 있는 등 규정범위에 차이가 있음.

5)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다.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또한,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은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로,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이 대부분 지원의 주체가 되는 제정안의 내용과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이 교육감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성인 학습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학교밖 청소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학생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포함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유치원 역시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이고,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⁸⁾으로 '24.6.27.부터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유보통합의 이행 수준은 주관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것에 그치며 여전히 유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이므로 향후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교육·상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3.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정서 역량 함양 및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조사·교육·상담 등 제도적 장치와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3조의 각 항에서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 또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정안 제8조와 제16조에서는 각각 교육감과 보호자의 임무(책무)를 규율하고 있는바⁹⁾, 둘 이상의 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의 책무를 한데 모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제3조에 이어 제4조 및 제5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안 제8조의 검토의견 참조).

제정안 제4조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일반법¹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9) 「**학생마음건강지원법안**」 제8조(교육감의 임무 등) ①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258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선적 적용과 보충적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른다.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2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체계의 구축(안 제5조~제13조)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 제5조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2.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3.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4.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매뉴얼의 개발·보급 6.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7.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 제5조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된 기본계획·시행계획·이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5조제4항에서 교육감이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 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실행 및 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

로 교육감의 지역 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이행에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다만, 교육감이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감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획일적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의 개별적 상황이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제정안 제6조의 조 제목과 관련, 계획 수립만이 아닌 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또한 목적이므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와 같이 조 제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의 주체로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과 교육감의 시행계획이 필요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2)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또는 지정(안 제7조)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7조(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 지원 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연구 지원 3. 학생 및 학부모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 5.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6.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등 위기관리 지원 7.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지원 운영 및 연계 지원 9. 제17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10.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지정·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은 그 성격상 민감정보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문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제정안 제7조제3항에서 중앙지원센터를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1항11)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2)에 따

11)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라 설립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 추진, 교육자료 및 연수과정 개발, 지역센터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할 전문성 있는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한국교육환경보호원)’, ‘위 프로젝트 전담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의 통합 수행 및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이 행정기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 행정기관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는 각 부처의 직제로 규정함이 원칙이므로 중앙지원센터 ‘설치’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생략)

(3) 교육감의 임무,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신설, 지역학생마음건강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안 제8조~제10조)

제정안은 교육감의 임무를 규정하고(안 제8조),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며(안 제9조),

교육감이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8조(교육감의 임무 등) ①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건강·상담·학생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교육감 소속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2.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조정 3.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4.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5.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
 6.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7.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교원연수·컨설팅 등 학교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역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는 교육감의 임무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교육청에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 제3조와 유사하게 책무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의 책무를 한데 모아 규정한 입법례¹³⁾를 참고하여 이를 제3조에 이어 제4조로 규정하는

1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9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기관 간 업무 조정, 연계 체계의 구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유사한 성격의 교육감 소속 다른 위원회를 활용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임.

참고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14)의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또는 「학교보건법」 제17

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15)의 ‘시·도학교보건위원회’가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8,500만원(연평균 5,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 용역비, 안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원 수당을 고려한 것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생 마음건강증진 기본계획 (안 제5조)	30	-	-	-	-	30	6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안 제9조)	51	51	51	51	51	255	51
계	81	51	51	51	51	285	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0조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 교원연수·컨설팅 등 학교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 역할을 수행¹⁶⁾하고 있는 위(Wee) 센터¹⁷⁾가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교육부가 최근 위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종합적 진단·지원 체제를 갖추는 등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기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임.

16)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
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
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7) 2024년 기준 전국 207개소 운영 중(병원형·가정형 위 센터 제외)

< 위(Wee) 센터 주요 변화방향 >

	지금까지		앞으로
대상 및 기능	• 위기학생 위주 * 학교폭력 가·피해, 자해·자살 시도 등 고위기	→	• 위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	• 위기상황별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연계 • 교사연수 등 학교전문성 강화, 학교컨설팅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거점센터, 학생 맞춤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종합적 진단·지원 ※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학교폭력, 자살, 학교부적응 등)에 대한 통합관리
조직 인력	• (강화) • 저경력자 위(Wee) 센터 배치	→	• 상담 및 행정 관련 전문성 강화 • 위(Wee) 센터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기능 확대			

자료: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11p)

위 센터는 기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이에 따른 교육부 훈령에 근거¹⁸⁾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제정안을 통해 법률에 그 근거를 갖추려는 의도로 이해됨.

제정안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지역지원센터를 필요한 경우 시·도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략)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행정기관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학생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 제10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역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교육부는 지역 내 내실있는 정책·사업 추진과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시·도별 교육감 소속 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고, 지역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기존에 학생 상담·치유 및 학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위(Wee)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 센터 역할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다수의 외부 위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업무 조정' 심의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설치 또는 지정,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지원, 지정 취소(안 제11조~제13조)

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안 제11조),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가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 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하며(안 제12조),

지역지원센터,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1조(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의 종류·기능, 설치·운영, 출석 일수의 인정 및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①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이하 “정신건강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 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역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가가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전문가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과를 확인하고, 지역지원센터에 연계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과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역지원센터,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정신건강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교육감이 미리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위기 학생에게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의 역할을 하

고 있는 ‘위(Wee) 스쿨’¹⁹⁾, ‘가정형·병원형 위 센터’가 운영 중이며, 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위탁교육 지원 >

기관 구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
위(Wee) 스쿨	-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 상담 및 인성·직업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단기, 중장기(최대 2년) 위탁 가능
가정형 위(Wee) 센터	- 중·장기 위탁기관 - 보호·상담·교육을 통해 학생 적응 환경 개선 및 가정·학교 복귀 지원	3개월 이내 위탁 가능
병원형 위(Wee) 센터	-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교육·치료와 의료자문 및 필요 시 전문의의 병원 치료 지원	평일 이용

자료: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19p)

기존의 위 스쿨 역시 위 센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²⁰⁾ 중에 있으므로 제정안은 그 법률

19)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 스쿨)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

② 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제정안 제11조제2항은 학교장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조문²¹⁾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이고, 관련하여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상 학생은 정규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교육의 내용과 이를 받게 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 내에서 추가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2조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선입견 및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병·의원 등 연계가 어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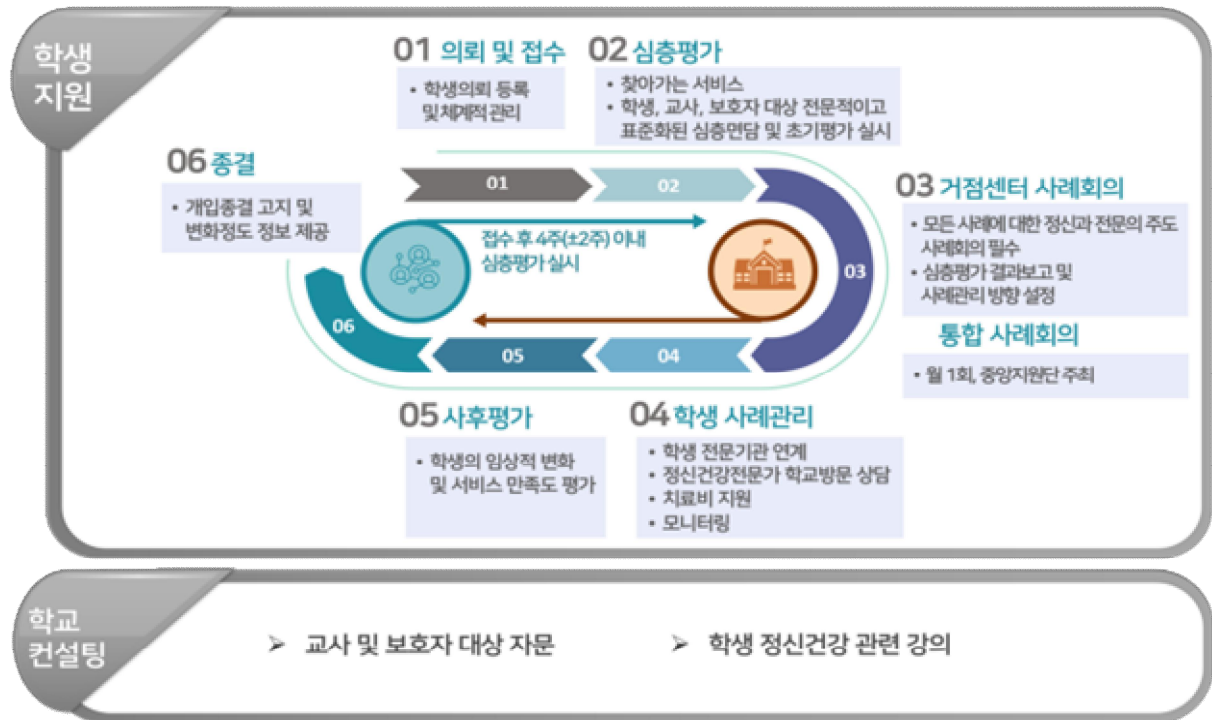
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려운 위기학생 개입 지원 사업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²²⁾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운영 절차 >



< 2023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정신건강 위기학생 의뢰 및 연계현황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의뢰건수	228	240	169	54	348	306	43	386	490	629	58	380	163	88	231	760	152	4,725
연계건수	213	232	166	52	287	268	43	356	421	622	42	321	146	68	231	760	152	4,380
연계율 (%)	93.4	96.7	98.2	96.3	82.5	87.6	100	92.2	85.9	98.9	72.4	84.5	89.6	77.3	100	100	100	92.7

자료: 교육부; 「2024년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 계획」

제정안 제12조제1항에서 교육감이 교육지원청마다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²³⁾ 등을 전문가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교육지원청을 지원할

22)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지원 중('24. 82.4억원, '25. 100억원)

23)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양성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됨.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 수에 비례한 전문가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5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제정안 제13조는 교육감이 지역지원센터,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정신건강전문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미리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지원센터 등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교육부는 위 스쿨 등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안 제11조),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 도움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의 경우 현장의 만족도와 요구가 큰 상황이므로 안정적 지원 제공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안 제1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인 ‘심리상담행위’²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4) 다만, 제정안 제12조의 정신건강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는 진단·치료가 아닌 상담 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수준이고, 심리상담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다. 제3장 학생 사회·정서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안 제14조~제16조)

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안 제14조),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절차 및 지원의 내용(안 제15조), 보호자의 협조 의무(안 제16조)를 규정하고 있음.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4조(사회·정서 역량의 함양)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이하 “지원대상 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요청을 한 사람, 학생 본인 및 보호자, 관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생에 대한 상담결과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위기학생지원, 학생상담 등을 위한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기존 상담결과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교육감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선정된 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에 대한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6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문제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심리, 건강,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실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6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4조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서교육’에 해당함.

사회정서교육은 초·중등학생의 사회정서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4가지 영역(자기, 관계, 공동체, 마음건강)과 6가지 핵심역량(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과 관리, 정신건강 인식 및 관리)으로 구성된 교육으로, 2024년 개발을 시작하여 2025년부터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도입 로드맵(안) >

기본형(2024년)	→	도약형(2025년~2026년)	→	완성형(2027년)
· 학교급별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연계 및 활동 중심		· 대상자별·교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체험형·지역 연계형 중심		· 핵심 모델 개발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중심
· 시범 적용·활용		· 학교 활용 지원 · 학교 문화 조성		·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기본형) 내용 구성(안) >

구분	초등 저	초등 고	중	고
대상 (주학년)	1~2학년(2학년)	3~6학년(5학년)	1~3학년(1학년)	1~3학년(1학년)
교육목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는 역량 함양			
핵심 역량(6)	자기 인식 및 관리, 관계 인식 및 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정신건강 인식 및 관리			
운영 시간	교과(연계)수업, 조종레시간, 자율(시간)과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활용			
운영 교과(사)	관련 교과(사), 학교(급) 문화 조성 / ※ 선도교원 양성, 수업사례 나눔·확산			
개발 자료	총 6차시 분량			
	※ 수업시간 외에도 교사가 언제든지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5~10분가량의 단편 교육자료, 학생 자기주도 학습용 등 자료와 수업실연(사례) 동영상 등 포함			
자료형태	학생용 워크북, 교사 지도서, 교수 학습 자료(PPT, 동영상 등)			

자료: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14p)

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정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제정안 제14조제2항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실시하도

록 하였는바, 학생들의 마음건강에는 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자의 이해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자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신 보호자가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제정안 제15조에 따르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안 제1항~제4항), ②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을 요청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안 제5항).

선정 방법을 이원화한 것은 학교장이 일차적으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지만,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개입하도록 하여 다층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참고로, 제정안의 지원대상 학생 선정 절차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상의 지원대상 학생 선정 절차²⁵⁾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2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②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제6항은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 학생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제7항은 학생의 심리, 건강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의 심리·건강상 문제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긴급지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5.2.6.)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7,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와 유사하므로 입법 실익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논의 과정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에서 각각의 안에 포함되었던 보호자의 동의 없는 긴급지원 조항²⁶⁾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우려로 삭제된 채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긴급지원 관련 조항 또한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6조는 보호자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안 제8조의 교육감의 책무와 마찬가지로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이어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보편적 예방교육으로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내 체계적·지속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안 제14조), 정서·행동 문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상담 실시 및 관련 위원회 활용 등의 절차와 지원 내용을 충실히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안 제15조).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므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침해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26) 의안번호 2202566,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있으므로 학교의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보호자의 친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의 심리·건강·안전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전문가 의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제4장 보칙

(1) 교원의 연수지원 등(안 제17조)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원 양성기관이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7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학생 상담·지도·치료연계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과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7조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학생 상담·지도·치료연계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후자가 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항은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이에 준하는 교원 양성기관에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제정안 제4항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내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실질적 보상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 또는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²⁷⁾

다만, 학교 현장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와 같은 교원 외에도 전문상담사 등 교원이 아니지만 마음건강 증진 업무를 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당하고 있는 인력이 존재하므로, 상훈 수여와 가산점 부여의 대상 범위를 ‘교원’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가 필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 역량강화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상훈 및 가산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유도 및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 의견²⁸⁾ 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사 및 기타 학생 지원 관련 직원 등을 포괄하기 위해 제4항의 상훈 및 가산점의 대상을 ‘교원’에서 ‘교원 등’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8)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2) 비밀유지 등(안 제18조~제20조)

제정안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8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안 제20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8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제18조 및 제20조는 학생의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지원 업무 수행자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 지원 업무가 신뢰와 보호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제정안 제20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 「학교보건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입법 의도와 유사 입법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의 형량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수행 업무별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법률명	조문	수행 업무	처벌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제19조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제3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자살예방 직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85조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안 제19조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²⁹⁾와 같

29)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

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청탁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교육부는 개정안과 같이 학생 정서·행동 지원 업무 수행자의 비밀 누설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마. 부칙(안 부칙)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둠.³⁰⁾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역지원센터 지정의 기준·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므로 학기 중에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시작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년도에 맞춰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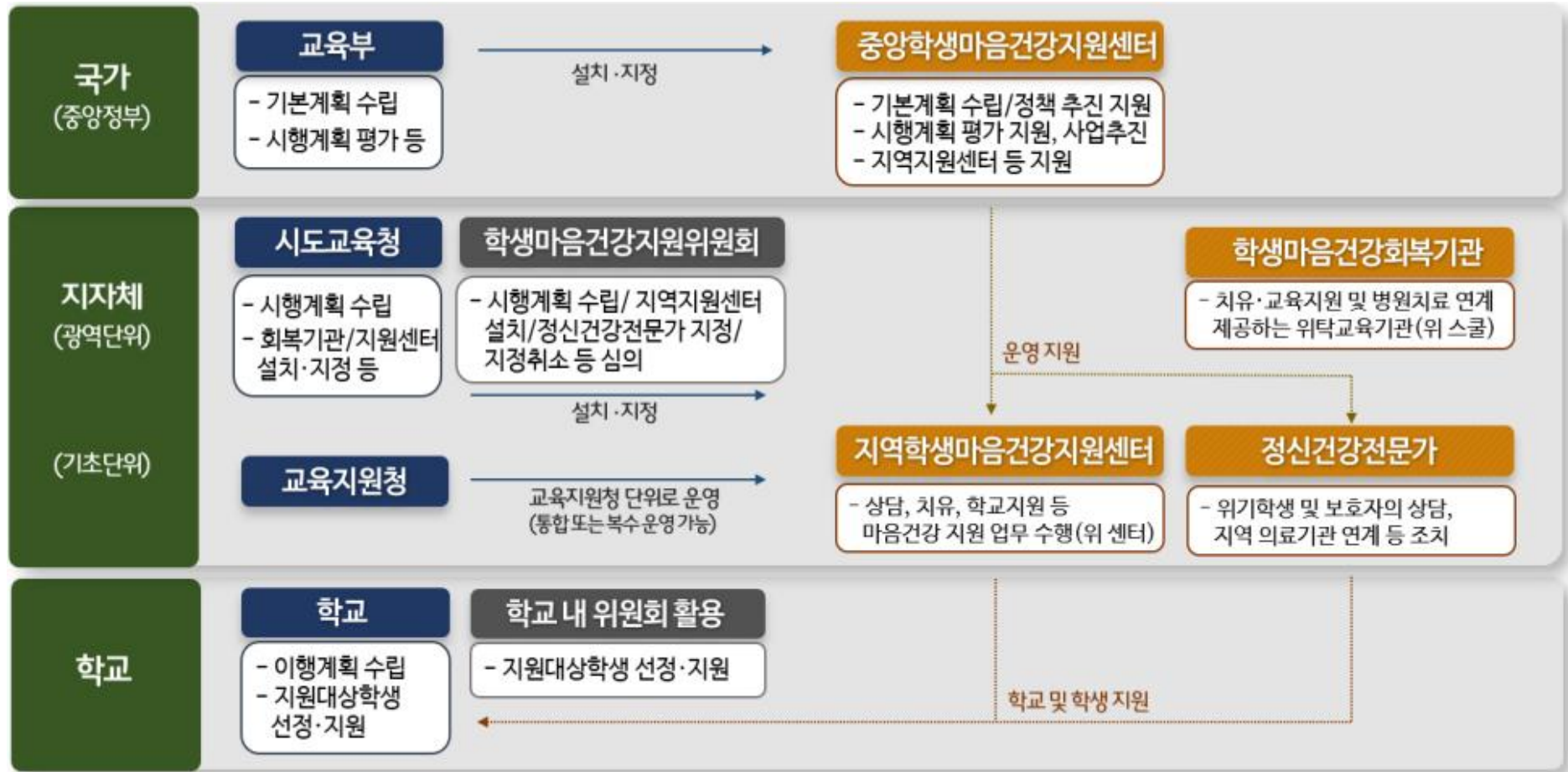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184

30)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821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다. 한편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참고자료 1

「학생마음건강증진법」에 따른 마음건강 지원체계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Wee 프로젝트 관련 통계

1. 위 프로젝트 구축현황(연도별)

(단위 : 개, 누적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위(Wee)클래스	6,161	6,382	6,624	6,965	7,230	7,631	8,059	8,619	8,863	9,115
위(Wee)센터	198	204	215	213	216	231	238	238*	239	242
- 가정형	-6	-12	-15	-17	-17	-17	-19	-19*	-19	-19
- 병원형	-5	-5	-5	-5	-9	-10	-13	-13	-14	-16
위(Wee)스쿨	11	11	13	13	14	15	15	16	17	17

※ 위(Wee) 센터: 2024년 부산 위(Wee) 센터(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 Wee상담실) 신설, 광주 병원형 위(Wee) 센터(조선대학교병원 병원형Wee센터, 국립나주병원 병원형Wee센터) 개소

* 2018년~2021년까지 3개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던 충남 가정형 위(Wee)센터(차오름센터)의 통합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는 한 개 기관으로 표기함. (2018년~2021년도 수치 보정)

2. 위 프로젝트 인력 현황(연도별)

(단위 : 명, 누적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문상담교사	1,781	1,872	1,958	2,557	2,810	3,212	3,850	4,574	4,776	5,043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308	339	363	600	820	820	824	826	826
전문상담사	3,706	3,853	3,681	3,488	3,220	3,494	3,444	3,275	3,125	3,008
합계	5,795	6,033	5,978	6,408	6,630	7,526	8,114	8,673	8,727	8,877

3. 위(Wee) 클래스 상담 건수

(단위: 건)

시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내부 상담전문가	외부 상담전문가	내부 상담전문가	외부 상담전문가	내부 상담전문가	외부 상담전문가	내부 상담전문가	외부 상담전문가
계	2,038,753	271,345	2,856,924	343,596	3,206,299	350,208	3,322,859	352,976
	2,310,098		3,200,520		3,556,507		3,675,835	

※ 상담 건수는 [학교정보공시]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 현황(매년 4.1.)으로, 모든 주제에 대한 상담 건수

- 기준일자 : 공시전년도 3월1일 ~ 공시년도 2월말(공시기관: 초·중·고·특)

-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 건수의 합계

* 학교상담실, 교내 위(Wee) 클래스 소속 전문상담교사, 상담전문가 등 상담전담인력으로, 호칭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 센터, 타학교 위(Wee) 클래스 등 학교외부 상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